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08 발의연월일: 2021. 11. 18.

발 의 자:김성원·박대수·박덕흠

서일준 · 이채익 · 임이자

조명희 · 최춘식 · 추경호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 야 함.

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,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.

이에 현행법의 '작목'을 '재배작물'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,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"작목"을 "재배작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	제76조(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
과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	과) ①
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	
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	
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	
<u>작목</u> 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	<u>재배작물</u>
직접지불금 신청·등록 농업인	
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	
부과할 수 있다.	<u>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	③
배면적 조정의무 대상 <u>작목</u> 선	<u>재배작물</u> -
정, 부과 절차 및 방법, 통보할	
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